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36

발의연월일: 2021. 4. 13.

발 의 자:정동만·강민국·조경태

전봉민 • 박성민 • 박대수

박형수 • 유창현 • 최승재

김기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여행의 다양화,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숙박 및 취사를 하는 여행인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.

그런데 차박으로 인하여 자연 훼손,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, 개별법에 따라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일정 지역에서는 취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차박 여행객이 무분별하게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일정 지역에서만 차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박을 양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3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00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제2항 전단 중 "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관광객 방문시간 제한"을 "관광객 방문시간 제한, 편의시설 설치, 이용수칙 고지"로 한다.

- 1.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
- 2.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· 취사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8009호 관광진흥법 법률 제1800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 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 화) ① (생략) 화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・도지사나 시장・군수・ 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에 해당하는 지역을-----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 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 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 이 같은 시·도 내에서 둘 이 상의 시・군・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 고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・도지 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. <신 설> 1.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 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 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 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

<신 설>

- ③ ~ ⑤ (생 략)
- ⑥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 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, 차량・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⑦ ~ ⑩ (생 략)

ス	역
---	---

- 2.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 한 숙박・취사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, 이용료 객 방문시간 제한, 편의시설 설 치, 이용수칙 고지-----
 - ⑦ ~ ⑩ (현행과 같음)